

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11 호
----------	---------

○제출일시 : 2008. 2. 4
○제 출 자 : 김석준의원 외 2명

1. 제안이유

재향군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에 상응하는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와 지역사회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예우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 함 (안 제4조)
- 나.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(안 제5조)
- 다.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추모사업 및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 등 공익활동 사업의 범위를 정함 (안 제6조)
- 라.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(안 제7조)

3. 근거법규

- 가.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 5조, 제 16조
- 나. 지방자치법 제9조, 제22조

4. 검토의견

- 가.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, 국민들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심을 함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나.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설립취지에 적합하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사항 등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봄.
- 다. 다만, 여타 보훈단체에서도 당장은 조례제정 요구가 없으나,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형평성 등을 내세워 단체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음.

【참고자료】

□ **大韓民國在鄉軍人會法**[일부개정 2001.1.8 법률 제6348호]

第5條 (會員의 資格) 會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로 한다. <개정 1973.10.10, 1992.12.2, 2000.12.26>

1. 陸軍·海軍 및 空軍의 豫備役
2. 補充役 또는 第2國民役으로서 召集되어 軍服務를 마친 者
3.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役 또는 兵役이 免除된 將校·准士官·副士官 및 兵

第6條 (組織) ①在鄉軍人會에 本部, 市·道會, 市·郡·區會 및 邑·面·洞會를 두며,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場에 근무하는 者를 위하여 職場規模에 따라 職場支會·聯合分會 또는 分會를, 海外居住者를 위하여 地域別 規模에 따라 海外支會·聯合分會 또는 分會를 둘 수 있다.

②在鄉軍人會는 本部를 首都圈에 두며, 特別市·廣域市 및 道에 市·道會를, 市·郡·區(自治區에 한한다)에 市·郡·區會를, 邑·面·洞에 邑·面·洞會를 둔다. <개정 1997.1.13>

[전문개정 1992.12.2]

第16條 (財政) ①在鄉軍人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·事業收入 기타 收入으로써 充當한다. <개정 1992.12.2>

②國家는 在鄉軍人會의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24>

③地方自治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在鄉軍人會의 事業에 대하여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

지방자치법[일부개정 2007.5.17 법률 제8435호] **최근개정법령**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 (보조대상) 보조금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, 공익단체,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

사업중 「**지방재정법**」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**구가 장려 또는 보호**

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,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

수

있다.<개정 2006.6.26>

제6조 (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)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)은 매년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,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울산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
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

□ 현재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○ 36개 단체

-시·도 7 : 부산, 인천, 대전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북

-시·군·구 29 : 서울9(25), 부산1(16), 대구8(8), 인천2(10), 광주1(5),
경기3(30), 충북1(12), 전남1(22), 경북2(23), 경남1(20),

※ 미제정 자치단체 : 209개 단체(광역8,기초201)

-조례제정이 전무한 시·도 : 울산, 강원, 전북, 제주

□ 울산광역시 제정 현황

○울산광역시 : 2월 임시회 상정(수정가결)

○울주군 : 1월 상정 가결

□ 본 조례 제정시 타 보훈단체 요구에 대한검토

○ 모든 보훈단체 대상 지원관련 조례는 없음

- 근거 법이 3개 법률로 되어 있어, 통합조례 곤란

※1.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

-재향군인회

2.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-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

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,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

3.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-(사)6·25참전유공자회

※고엽제 피해자 관련 법 제정 검토 중

○ 타 보훈단체에서 당장은 개별 조례제정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제기하여 조례제정을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음

전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구 분	계	본 청	기 초 자 치 단 체	비고
계	36	7	29	
서울	9	-	중구, 광진구, 도봉구, 은평구, 양천구, 금천구, 관악구, 서초구, 송파구	
부산	2	1	서구	
대구	8	-	중구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수성구, 달서구, 달성군	
인천	3	1	중구, 연수구	
광주	1	-	동구	
대전	1	1		
강원	0	-		
경기	3	-	성남시, 구리시, 양평군	
충북	2	1	제천시	
충남	1	1		
전북	0	-		
전남	2	1	여수시	
경북	3	1	영주시, 울릉군	
경남	1	-	마산시	
제주	0	-		